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고 제2023-27호)

「2023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하반기 추가(정기2차) 출자사업 계획(농식품투자 계정)」 공고

2023년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하반기 추가(정기2차) 출자사업(농식품투자 계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4.

1. 사업추진 목적

-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

※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

2. 출자분야 및 대상

□ 출자분야 및 결성규모

구분	출자분야	개수	모태최대 출자비율	최소 결성규모(억 원)		
				모태펀드	민간출자	결성총액
일반	농림축산식품	1	50%	100	100 이상	200 이상
		1	50%	100	100 이상	200 이상
		1	50%	100	100 이상	200 이상
특수목적	지역특성화(전북)	1	50%	60	60 이상 (사업체 30 포함)	120 이상
합 계		4	-	360	360 이상	720 이상

※ 자펀드 업무집행조합원(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각각)의 최소 출자비율은 펀드 결성총액(약정기준)의 1% 이상

□ 출자대상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을 구성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3. 주요 출자조건

□ 공통사항

항 목	내 용
존속기간	• 8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이상 10년 이내, 2년 이내 연장 가능
투자기간	• 존속기간의 1/2(최대 5년) (존속기간 및 투자기간은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조합 결성시한	• 선정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23년 내에서 유예 가능)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출자약정총액의 1% 이상(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각각)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자펀드의 의무투자비율	• 조합등록 후 3년이 지난 그 다음날까지 출자금 중에서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
연차별 의무투자비율	• 조합등록 후 1년 이내 25%, 2년 이내 50%, 3년 이내 60%, 4년 이내 80% 의무투자
의무투자비율에 대한 우선투자	• 의무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용근로자수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에 투자(우선투자)
선정우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전문벤처캐피탈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예정금액을 포함하여 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출자 약속서를 제출하는 경우 • 농식품분야 상생협력경영체*에 결성금액의 10%이상 투자계획을 규약에 약속하는 경우 * 3년 이상 연속해서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납품계약)를 통하여 원료 농산물을 조달해온 경영체 중 최근 3년간 계약재배(납품계약) 금액의 年 평균이 1억원 이상인 경영체 • 지역특성화펀드('20년), 영파머스펀드('22년, '23년)를 결성한 운용사가 출자사업*에 신청한 경우 * 결성 후 최초 출자사업 1회에 한함 • 각 출자분야 주목적투자 대상으로 지방기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이 있거나, 이전 계획을 확정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약정총액의 일정비율(40% 이상)로 제안하는 경우(규약 약속) * 단, 지역특성화펀드는 제외 • '22년 연차별 누적의무투자 비율을 5%p 초과하여 달성한 농식품 투자조합 운용사*가 출자사업에 신청한 경우 * '21년도까지 등록완료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22년 투자실적이 확인된 경우('23년 출자사업 신청 최초 1회에 한함) • 농식품경영체 투자를 위한 투자조합(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조합 제외) 결성 또는 출자 실적을 보유한 운용사가 신청한 경우 - 제안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결성 또는 출자 실적이 100억원 이상 보유한 운용사로 하며,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농업경영체*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함 ** 투자대상을 농업경영체로 한정하는 투자계획을 조합규약에 약속하는 경우

항 목	내 용						
대표펀드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펀드매니저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신청조합 약정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2인 이상, 400억원 이상인 경우 4인 이상)의 참여인력으로 구성하고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조합을 포함하여 4개 이하이고,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미만 이어야 하며, 참여인력 개인별 관여 금액(관여 펀드의 약정총액/참여인력 수)의 합은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함 * 본 조합을 포함하며,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펀드)는 제외 * 참여인력과 관리인력은 겸직할 수 없음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 : (조합약정총액 × 연 1%) + (투자잔액* × 적용요율) * 분기말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 • 조합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산하는 날까지의 기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적용요율 <p style="text-align: center;">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조합 약정총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연 2.5% 이하</td> </tr> <tr> <td>• 조합 약정총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연 2.3% 이하</td> </tr> <tr> <td>• 조합 약정총액이 600억원 초과: 연 2.1% 이하</td> </tr> </table>	• 조합 약정총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연 2.5% 이하	• 조합 약정총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연 2.3% 이하	• 조합 약정총액이 600억원 초과: 연 2.1% 이하			
• 조합 약정총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연 2.5% 이하							
• 조합 약정총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연 2.3% 이하							
• 조합 약정총액이 600억원 초과: 연 2.1% 이하							
추가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목표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운용사의 추가 관리보수로 지급 - 기준 시점별 투자목표금액 초과달성분의 1%를 추가 관리보수로 산정하고, 규약에 따른 조합재산의 배분 시 모태펀드 배분재원에서 차감하여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연차별 투자목표비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조합등록 후 만 1년</td> <td>출자약정액 총액의 40%</td> </tr> <tr> <td>조합등록 후 만 2년</td> <td>출자약정액 총액의 70%</td> </tr> <tr> <td>조합등록 후 만 3년</td> <td>출자약정액 총액의 90%</td> </tr> </table>	조합등록 후 만 1년	출자약정액 총액의 40%	조합등록 후 만 2년	출자약정액 총액의 70%	조합등록 후 만 3년	출자약정액 총액의 90%
조합등록 후 만 1년	출자약정액 총액의 40%						
조합등록 후 만 2년	출자약정액 총액의 70%						
조합등록 후 만 3년	출자약정액 총액의 90%						
수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모태펀드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을 통해 조합자산 운용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지정한 회계감사인 POOL에서 선정 						
전자보고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 사용 의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200% 이내를 지정하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의무 부여 가능(단, 투자 의무 금액은 결성총액의 40% 이하로 함) • 금번 선정 조합이 조합 등록일로부터 만 1년 이내 출자 약정액 총액의 40% 이상을 투자할 경우, 비율 충족 이후 시행하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우대 가점 부여 * 자조합 당 1회로 제한하며, 선정 우대 기한 등 세부 기준은 투자목표비율 달성 조합 대상 개별 안내 예정 • 투자기업의 고용실적, 재무관련(매출액 등)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농금원이 주최하는 사업설명회(IR)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며, 참가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를 하여야 함. 단, 투자의 최종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 						

□ 일반분야(농림축산식품)

항 목	내 용
주목적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경영체 중,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영체 *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투자금지
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약정총액의 50% 이하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에 투자한 실적이 결성금액의 40% 이상일 경우,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를 제외하고, 농식품모태펀드에 분배될 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보수를 업무집행조합원에 인센티브로 지급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text{농식품모태펀드 수령 분배금} \times \text{Max}[(10\% \times \frac{\text{지자체 투자비율} - 40\%}{60\%}), 0]$ </div>
성과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수익률 : IRR 5% 이상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 특수목적분야(지역특성화(전북))

항 목	내 용
주목적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한 지자체 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농식품경영체 또는 출자 지자체 내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농식품경영체
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약정총액의 50% 이하 * 120억원 이상으로 결성하되, 모태펀드 60억원(50%), 지자체 30억원(25%) 출자 예정
모태펀드 콜옵선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20%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콜옵선 부여 가능.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은 부여대상에서 제외 * (행사가격) 해당 지분 원금에 일정 수준 복리 이자 합산 금액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text{원금} \times (1 + \text{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0.5\%p)^{\text{경과기간}}$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기간) Min(결성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투자기간 종료일) * 유한책임조합원 매수권리는 행사시점 당시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한도로 함 * 운용사 제안 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 투자비율인 60%를 초과해 주목적 분야에 투자할 경우 초과 투자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 * 단, 인센티브 재원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를 제외하고, 농식품모태펀드에 분배될 금액의 10% 이내로 함
성과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수익률 : IRR 2% 이상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4. 자펀드 선정기준

□ 자펀드 선정기준

- 회사현황, 투자조합 운용능력 및 운용실적, 조합결성 및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과 투자전략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합 결성 가능성 및 운용의 안정성을 중시

구 분	평 가 내 용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의 재무적 안정성 ○ 대표이사의 경영능력 ○ 업무집행조합원의 재무적 안정성 등
투자조합 운용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책임자의 능력 ○ 투자능력 제고 전략 ○ 투자심사인력의 투자실적 ○ 농식품산업에 대한 이해 및 접근전략 등
운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조합의 운용 경험 ○ 투자조합 운용 규모 ○ 청산 및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성과 등
조합결성 및 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원 조달 가능성 ○ 투자대상 발굴 및 결정시스템 ○ 투자방법 구성의 적정성 ○ 투자자금 회수전략의 차별성, 현실성 ○ 투자심사인력 관리상황의 적절성 ○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제안 ○ 투자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등

□ 선정 우대조건

- 세부 선정우대 조건은 상기 「3. 주요 출자조건」 을 참고

※ 선정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서류평가 시 최대 10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발급 기준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전문인력(심사역)을 2명 이상 보유한 경우
: 농식품분야 창업 후 5년 이상 운영한 자, 농식품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농식품관련 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해당 전문인력(심사역) 1명 이상이 참여인력(대표펀드매니저 포함)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 적용
- 농식품투자조합을 2개 이상 또는 결성금액 300억원 이상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투자기간 종료 조합만 해당)
- 농식품투자조합 투자건 이외의 농식품경영체 투자실적을 2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신청일 기준)

▶ 인증서 발급 절차

- 인증서 발급신청(운용사) → 기준 적합여부 심사(농금원) → 인증서 발급(농금원)

※ 매 출자사업시마다 발급하며, 기 발급 받은 경우에도 재신청하여 신규 발급받아야 함.

□ 선정 배제조건

- 일정 횟수 이상의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인 업무집행조합원
- 과거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투자조합의 성실한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집행조합원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무집행조합원
-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업무집행조합원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집행조합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운용사에 대한 거래 제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퇴직 전 1년 이내에 투자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3급 이상(3급은 부서장인 경우에 한함) 직원이 대표이사, 대표펀드매니저 및 운용인력으로 참여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운용사 선정에서 배제
-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

5. 선정취소 및 제재사항

□ 선정취소 대상

- 업무집행조합원이 중대한 규약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업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안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고의에 의한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된 경우
-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등 당해 자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재 사항

- 결성시한까지 조합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은 결성 시한일로부터 최고 3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제한
- 기본규정 제10조에 해당되어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은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제한
- 규약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조합 해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제한

6.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2차 심의(투자심의위원회)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내 용	비 고
2023. 8. 18. (금)	제안서 접수 마감	당일 15:00시까지 접수
2023. 9월 이내	최종 선정 및 결과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2023. 12월 이내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내결성 필수

7. 지원방법 및 접수마감 시한

- 지원방법: 제안서 양식에 의거한 제출서류(별첨 참조. 제안서 제본2부 및 확인서류 제본1부)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까지 방문제출
- 접수시한: 2023. 8. 18. (금). 15시까지(접수시한 내 접수처 도착분까지 인정)
- 접수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고객상담실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층
 - (연락처) 02-3775-6734, 6771, 6774, 6787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외부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운용사에 선정 배제·취소 등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7. 24.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